

#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미간 투자 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Investment Environment to Cope with Korea-U.S. FTA

허형도(Hyung-Doh Hur)

동국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 목 차

- |                           |                       |
|---------------------------|-----------------------|
| I. 서론                     | V. 요약 및 향후 투자 환경 변화전망 |
| II. 한·미 FTA 이전의 투자환경      | 참고문헌                  |
| III. 한·미 FTA 이후의 투자환경     | ABSTRACT              |
| IV. 한·미 FTA 이후 투자 현황 및 분석 |                       |

## 국문초록

한·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미 FTA, 양자간투자협정(BIT), 투자챗터, 투자환경, 국제투자규범

## I. 서론

2013년 11월 현재 한국이 체결하고 발효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수가 9개에 이르렀다.<sup>1)</sup>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 방안으로써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려는 한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sup>2)</sup> 다자체제에서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속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전략으로서의 FTA는 단순히 상품시장에서의 개방이 아닌,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이나 환경정책 공조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FTA 체결의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협상은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FTA 협상이었을 것이다. 다른 FTA 기체결국과의 마찰보다도 한·미 FTA가 더욱 관심을 받은 데에는 단순히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강대국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FTA의 범위가 훨씬 넓고 시장자유화의 정도가 상당하였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NAFTA 모델을 중심으로 이전의 한국의 FTA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사안들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시장개방과 더불어 외국 자본의 유입 및 해외투자확대를 좌우하는 투자챕터가 포함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전 한국과 미국 간 시도되었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BIT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FTA의 체결에 대해 “FTA라는 포괄적인 협상테이블에 다시금 BIT를 올림으로써 막무가내 식으로 타결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투자 관계만이 아니라 무역 전반을 고려한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정 확립을 통하여 한·미 FTA는 보다 더 큰 투자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전과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환경, 특히 규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협정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FTA 이전에 투자자유화의 방법으로 추구되었던 다자체제 및 양자 간 투자협정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양자 간 투자자유화 및 보호를 확립한 한·미 FTA에서의 투자챕터와 그 외 투자관련 조항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FTA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의 결과를 실제 무역량 변화 데이터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 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기존에 분리되어있었던 경제·정책학적 접근과 법학적 접근을 통합하여 구체적인 법 조항의 분석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참조. <http://www.fta.go.kr/new2/ftakorea/ftakorea2010.asp>

2)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정책 참조. <http://www.fta.go.kr/new2/ftakorea/policy.asp>

3) 이해영, 이정태, “2004 한미 BIT 개정안” : 이해영 교수 인터뷰 : “한미 FTA 체결되면 제별 경영권도 위태롭다”, 월간 말, 2004. 참조

## II. 한·미 FTA 이전의 투자환경

### 1. 다자간 투자 협정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의 투자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다자적 투자자유화를 시도하였다. 1980년대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각국 정부들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sup>4)</sup> 이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이 타결되었고, 투자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서 그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GATT 체제하에서 동 협정은 단지 상품무역과 관련된 것만을 다루게 되었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입장차이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sup>5)</sup> 투자에 대한 규범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서비스협정(GAT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GATS는 상품무역이 아닌 서비스 관련 투자문제를 따로 다루었기에 TRIMs협정과는 구별되며, 특히 Mode 3 외국서비스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다루고 있다.<sup>6)</sup> 하지만 이 또한 서비스시장의 개방 중 일부 투자분야와 중첩되는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기에 투자자유화에 대한 완전한 규범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WTO 체제 내에서의 투자협정을 살펴 볼 때, 아직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방식이 부족하고 목표설정 노력이 부족하며 투자보호와 투자자 자유화에 관한 문제 및 서비스분야의 투자 포함 여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인한 투자 관련 논의가 현재는 결렬된 상태이다.<sup>7)</sup>

WTO와는 별개로 1995년부터 시작되었던 다자간 OECD 투자협정(MAI)을 통한 다자적 투자자유화 체제의 노력 또한 각국의 입장 차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1998년 12월 공식적으로 사실상 협상 실패가 선언되었다. MAI는 투자자유화와 투자자 및 투자 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동시에 강도 높은 협정으로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각국의 견해차이, 특히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의 입장차이로 인

4) 이러한 제한은 GATT 1994 제 III조 (내국민 대우 원칙), 제 XI조 (수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되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들은 무역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투자조치의 규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협상 (1986년 폰타델에스테 선언에 포함)을 개시하였다.

5) 법무부 (정수봉),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법무부, 2008, pp. 19-20.

6) 최혜국 대우 원칙 (GATS II조), 투명성 (GATS 제 III조), 내국민대우 (GATS 제 XVII조), 분쟁해결조항 (GATS 제 XXII조, 제 XXIII조) 등 주요 규정이 외국인투자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7) 이후 1996년 싱가포르 이슈 중 투자부문에 대해서 무역투자작업반이 설치되었고, 2001년 11월에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제5차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토대를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주로 개발도상국)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하여 무산되었다.<sup>8)</sup>

이렇듯 다자간 투자 협정은 여러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 및 다양한 입장 차이,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 및 견해가 대립하므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자체제에서의 투자자유화 노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 또한 대부분 이러한 실패 요인을 인정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각국 간의 투자 환경을 정립하고 규율함에 있어 좀 더 수월한 BIT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BIT가 당사국간의 원활한 합의에 의해 성공적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며, 한·미 BIT 또한 다자적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이견 조율의 실패사례가 되었다.

## 2. 한·미 양자 간 투자협정 (1998년)

BIT는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해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대표적인 투자협정으로서 궁극적으로 협정체결 국가 간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전 세계적 차원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투자규범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의 투자에 대한 국내 규범 수준은 다양하며, 자유화 수준이 국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자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국 간 견해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도 빈번하였다.

이러한 BIT를 체결하려는 노력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직접적으로 한·미 BIT가 시도되기 이전 1992년에는 한·미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논의는 1992년 한미정상 회담에서 공식발족하고 이후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3년 한·미 경제협력대화에서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1995년 후속 협의회에서 미국이 한미 BIT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OECD 다자간 투자협정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내 1998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은 미국에게 BIT 체결을 제안하게 되었으나 결국 한국이 우려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1년간의 협상은 중단되었다.<sup>10)</sup>

8) MAI 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위해서는 Wesley Scholz,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1, 1998, pp. 485, 487-490, 그리고 Maurit Lugard, "Toward an Effec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91, 1997, 496-499 참조

9) Tieleman, Katia, "The failure of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and the Absence of a global Public Policy Network", UN Vision Project on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2000, Kurtz, Jurgen. "General Investment Agreement in the WTO-Lessons from Chapter 11 of NAFTA and the OEC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3 (2002): p. 713, Sauv e, Pierre. "Multilateral rules on investment: is forward movement possibl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9.2 (2006): 325-355 참조.

10) 김정수,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9권 1호, 2004.

### Ⅲ. 한·미 FTA 이후의 투자환경

#### 1. 한·미 FTA와 국제투자규범 및 양자간투자협정(BIT)과의 비교

비록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보편적인 국제투자규범이 확립되지는 못하였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는 국제투자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WTO 및 OECD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한·미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 WTO 의무수준보다 더 완화된 투자규제 및 투자기회의 증대는 WTO상의 RTA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원칙의 면제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더욱 중요한 것은 FTA와 BIT의 관계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BIT를 체결해왔고 역사적으로도 FTA보다 더 오래되고 다양한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협정이다. BIT는 투자부분에만 국한되며 주로 투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FTA는 투자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개방과 더불어 투자 ‘자유화’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BIT의 오랜 역사에 따라 대부분의 FTA 투자챕터들은 BIT에서의 형식을 원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투자협정관계를 살펴보면, 한·미 BIT 협상이 미국의 1994년 BIT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데 반해 현재의 FTA 투자챕터는 2004년 개정 투자협정 모델을 기반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한·미 FTA는 투자챕터를 포함함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한 시장개방을 수반하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대 효과가 일반 BIT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FDI에 미칠 영향에 대한 박순찬·강문성 (2006)의 계량적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역외국가로부터의 FDI를 42-70%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Egger and Pfaffermayr (2004)는 1982-97년도까지 OECD 회원국 19개국의 54개국과 체결된 BIT 증대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BIT가 체결될 경우 쌍방 간 FDI를 약 30%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리고 OECD (2006)는 15년간 (1990-2004)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BIT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BIT가 포함된 지역자유무역협정(RTA)이 체결될 경우 FDI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무역과 투자간 보완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며, 즉 투자자유화의 확대나 투자보호의 강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라는 조건하에서 투자유치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미 FTA가 직접적으로 양국 간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투자관련 규범을 내포한 동 FTA가 어떻게 양국 간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2. 한·미 FTA내 투자관련 규범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변화

### 1) 한·미 FTA 투자챕터 (제11장)

한·미 FTA 제11장에 수록된 투자챕터는 투자의 정의, 투자 설립 후 보호와 투자자유화 달성여부, 이행의무부과 금지, 수용 부속서의 개정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율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BIT의 구조와 흡사하며,<sup>11)</sup> 스크린쿼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BIT를 FTA라는 광범위한 협상 테이블을 통하여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up>12)</sup> 기본적으로는 BIT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동일한 개념들이 투자챕터 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조항들에서 다루고 있다. 동 투자챕터가 포함된 FTA의 발효는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근거한 국제법의 지위에 따라서,<sup>13)</sup> 외국인투자, 특히 미국인의 투자에 관련되는 국내 투자환경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범 창설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협상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구체적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관련 FTA의 조문과 한·미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규범들이 적용되는 범주의 설정은 FTA상의 투자보호 및 투자자유화 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투자협정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있어서 해석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한·미 FTA 제11.28조상의 ‘투자’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이나 여타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 등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닌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자산개념에 기초한 광의의 투자개념<sup>14)</sup>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2004년 BIT모델과 유사하게 규정된 것이며, 이 모델은 투자의 성격을 지니는 국경 간 모든 자산의 이동을 자유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외국인

11) 장화식, “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시민과 세계』, 참여연대, 2006, pp. 214-216.

12) 김정수,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9권 1호, 2004, pp.95-100.

13)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4) UNCTAD의 정리에 따르면 여러 BIT 등에서 정의하는 투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① 투자자의 기업 형태에 따른 정의 (enterprise-based), ② 자산형태에 따른 정의 (asset-based)

투자 촉진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 법은 한국이 기체결한 여러 BIT들의 기본 근간을 국내 법률로써 구체화 한 것이며,<sup>15)</sup> 한·미 FTA의 적용범주 또한 이러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투자 정의와 일치한다.

제11.28조에서는 ‘투자’뿐 아니라 ‘투자자’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투자챗터 상 보호를 받는 투자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연방 체제를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제11.1조 ‘적용범위’의 3항에서는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의 모든 조치를 적용범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주정부의 조치 또한 궁극적으로 FTA의 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 (2)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부여 수준

한·미 FTA 제11.3조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sup>16)</sup> 일반적으로 다른 BIT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체제라는 특수한 경우 때문에 유치국의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다.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FTA 체결에 있어 내국민대우로서 내주민대우 또는 타주민대우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내주민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sup>17)</sup> 제11.4조에서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sup>18)</sup> 비차별 원칙에 입각한 투자보호규범의 취지에 있어서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내국민대우와 달리 최혜국대우의 경우 다른 제3국과의 BIT 및 FTA상의 투자보호규범들이 자동적으로 대상 BIT 및 FTA에 포함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즉, 앞서 살펴본 다자체제에서의 투자 규범 확립의 실패 요인들을 고려할 때, 국가들이 투자보호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양자적

15)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16) 이는 일방 계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는 유치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에 대해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M Som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1994, pp. 250-251.

17) 내주민대우는 특정주(A주)내에서 FTA 체결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주민대우는 특정주(A주)내 에서 FTA 체결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나, 다른주(B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주민대우가 타주민대우보다 더 우월한 대우라고 할 수 있겠다.

18) 이는 일방 계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타방 계약당사국이 제3국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M Som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1994, pp. 270-271.

접근을 취하게 된 동기를 흐리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국들이 이미 체결한 BIT 및 FTA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규정은 기존 협정문들을 검토하고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만, 미래에 체결될 협정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미 FTA에서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서명되는 협정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sup>19)</sup> 이러한 미래 최혜국대우가 포함된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투자챕터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최혜국대우원칙이며, 향후 체결하게 되는 BIT 및 FTA 대상국과 관련되는 투자환경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과 관련해서 한·미 FTA에서의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바로 그 시간적 범위에 있다. 동 FTA에서는 다수의 BIT들에서와는 달리, 제11.3조와 제11.4조에서 모두 이러한 원칙들이 ‘설립 전 단계’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 전 단계’에는 투자진입 단계가 포함되며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진입조건을 다룸에 있어 국내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들 간에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투자설립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설립 전에서부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투자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시장접근 개방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지국의 국내법규에 맞게 투자설립을 승인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또한 투자유치국은 최혜국대우에 불합치하는 기존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최혜국대우에 불합치하는 새로운 조치를 부과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설립 전 단계 모델의 경우,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자의 규제라는 주권적 사항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되며, 설립 후 단계까지 포함한 투자의 전(全) 단계에 걸쳐 비차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sup>20)</sup> 한·미 FTA의 이러한 적용 범위 확대는 향후 투자환경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3) 대우의 최소기준: 국제관습법상의 기준

한·미 FTA 제11.5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에게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무화하고 있

19)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하였는데, 제11.12조에 따라 부속서 I에서 우리나라는 항공, 수산, 해운,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에 대해서, 미국은 항공, 수산, 해운, 위성방송에 대해 예외를 두었다. 상기와 같이 일부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배제함과 동시에 이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동 원칙에서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하였다.

20) UNCTA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 (Geneva: United Nations, 2010), p.42.

다. 대부분의 BIT 및 FTA에서 동 의무에 대한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명확히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부속서 11-가에서도 그 의미를 다시금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이 한국 내에 투자하는 경우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1)</sup> 대우의 최소기준이 한·미 FTA에서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지만 국제관습법상의 기준이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확신에 의해 형성되어 간다는 점,<sup>22)</sup>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에 대한 입장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요건이 투자환경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간접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

다른 BIT 및 FTA 투자챕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제11.6조에서도 수용규정과 간접적 수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투자국 정부의 재산권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수용 법리가 발전하여 간접수용 개념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러한 개념이 한·미 FTA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sup>23)</sup> 원칙적으로 투자보호의 취지상 국가의 일방적인 수용은 허용될 수 없겠지만, 국가 공공정책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공 목적을 위한 수용조치는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수용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고 비차별적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게 된다. 한·미 FTA 제11.6조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속서 11-나에서는 ‘수용’의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협상단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시각차가 있었다. 미국은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적 수용과 관련해서 비록 그 자체가 직접적인 재산권 박탈은 아니지만 상당한 피해를 준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수용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반면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개인의 재산보다 정부규제의 절대적인 우선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명확한 간접수용의 개념과 논리가 국내법제에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6조 2항에 의해 국제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국제법상 수용 법리

21)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22) 국제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사회의 각 국가 간에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간에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반복·계속된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②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각 국가가 장차에 있어서도 그 관행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그 관행이 사실로부터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23) 전통적인 개념의 수용(expropriation), 즉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직접 수용에 해당하는 반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경우 직접수용 이외의 방법으로 수용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국가 조치를 의미한다.

와 FTA 수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에게는 동일한 보호 수준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외국인투자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 설정으로 인한 토지사용 불가능 발생 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sup>24)</sup> 아직 실질적인 보상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간접적 수용을 포함한 수용에 대한 보상의무 규정은 비단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만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양자조약의 상호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로서의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국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조치로 인한 해외투자자산의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기업의 보호를 위해 발동할 수 있는 규정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 간 국내 규제체제 차이가 극복되고 보상입법 등을 통하여 체제가 유사해지게 된다면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으로 인하여 한·미 FTA 이후 상호 투자 증대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이행요건부과금지

한·미 FTA 제11.8조에서는 이행요건부과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행요건부과금지란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왜곡시키는 조치를 투자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투자의 투자결정은 시장조건에 대한 고려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현지국 정부의 인위적인 각종 조치들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가 가능하다. 단,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우, 또는 유보 부속서에 기재한 경우 부과가 가능해진다. 제11.9조에서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미 FTA에서 규제하는 이행의 무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고위경영자에 대한 제한이 아닌 이상 일정 요건 부과를 통하여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다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긍정적 효과를 통하여 미국과의 시장 개방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4) 헌법재판소 1998.12.24. 선고. 97헌바78 결정, 헌법재판소 1999.10.21. 선고. 97헌바26 결정

25)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수출 및 국내재료 사용 달성, 국내 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 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 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의 요건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결과적 이행의무 성격의 국내조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모델 BIT의 대표적인 결과인 NAFTA에서의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사례 중 문제시된 국내조치가 결과적으로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현지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이행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가 주장 한 바 있었다.<sup>26)</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행 의무적 성격의 부담을 받았다”는 투자자의 주장은 중재판정에서 아직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시된 조치가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면 이행의무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내조치가 사실상 이행의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를 너무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6)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

한·미 FTA 협상 단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사항 중 하나는 바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절차(ISD)이다.<sup>27)</sup> 우리나라도 이미 멕시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등과의 BIT 등 다수의 투자협정에서 ISD 절차를 이미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라는 거대 자본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직접 중재 피신청국이 되는 경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협상 당시 ISD 배제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이는 투자챗터의 일부로 포함되게 되었다.

한·미FTA 제2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 제11장 Section A(투자)상의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CSID,<sup>28)</sup> UNCITRAL,<sup>29)</sup> 기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절차<sup>30)</sup>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국제중재판정의 효력을 살펴보면,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지며, 상소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 부담이 있겠지만 중재 판결의 신속성이 도모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 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되며, 당사국의 해당 조치를 취소하도록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은 불가하므로 ISD를 통한 직접적인 규제환경의 변화 도모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직접 중재 청구하거나 또는 투자기업을 소유·통제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26) Pope & Talbot v. Canada, Award on the Merits(2001. 4. 10.), Paras. 73-80.

27) 이는 투자자들의 자산이 투자유치국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피신청국으로 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분쟁해결절차이다.

28)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 간 분쟁절차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관이다.

29)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산하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0) 여기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등 제3의 절차에 양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해당하겠다.

을 대리하여 중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신청 가능 투자자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제11.16조제1항).

한·미 FTA에서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또한 보장하고 있는데, 비밀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제11.21조)하도록 하면서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 후 시민단체 등 제3자 의견제출도 허용하고 있다(제11.20조제5항). 기본적으로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제11.18조)는 투자자가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미국인투자자는 협정상 의무 위반의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를 통해 제소가 불가능하고(부속서 11-마), 한국인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미국법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미국법원 제소 후에는 동 미국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의 ISD절차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자면, 수용 및 보상규정, 내국민대우 규정, 공정·공평대우규정이라는 3대 보호규정이 모두 포함된 투자챕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실체적 규범 하에서 이를 실현화하는 절차적 규범인 ISD 절차의 허용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각 당사국의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강대국인 미국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담이 너무 증가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다시금 돌이켜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내국민대우를 국내법제화하고 내국민대우를 전제로 모든 국내정책을 추진해왔으므로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 침해시의 이의제기권리는 국민 모두에게 존재하므로 기본적인 의무 유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투자챕터 외 투자관련 조항

### (1) 한·미 FTA 전문

한·미 FTA에서 별도의 투자챕터를 마련하고, 이전 BIT와 유사한 규정들을 흡수하게 된 것은 FTA의 시장개방이 단순한 무역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투자 활성화 효과 또한 함께 고려한 점에 기인한 것이다.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FTA 전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창출은 투자자 유화뿐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투자규범을 명확히 하고 투자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시장개방

을 위한 FTA에서 이렇듯 투자 관련 목적을 전문의 절반 이상에 걸쳐 명시한 데에는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외국인투자자가 더 큰 권리를 부여받지 않을 것”을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미국 국내에서 제기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점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전문은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의 해석원칙<sup>31)</sup>에 따라 FTA라는 조약의 모든 조문들의 해석에 있어 대상과 목적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챕터 외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 및 의무 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 (2) 서비스챕터상의 투자관련 규범

앞서 WTO체제에서의 서비스 규범이 투자와 연관되는 점을 설명하였듯이, 한·미 FTA 제12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그리고 제13장 ‘금융서비스’에 있어서도 투자에 대한 규범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의 유형 중 Mode3으로 분류되는 ‘상업적 주재’는 특히 FDI와 관련된다. 따라서 FTA 서비스챕터에서의 규범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Mode3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 유보 중 미래유보를 명시한 부속서 II 에서도 직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언급이 나타난다. Mode3 이외의 금융서비스에서는 FDI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각 분야에 대한 규정들은 FDI에 대해서도 일부 간접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 (3) FTA 전반에 걸친 투자관련 규범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무역 자유화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과 관련된 다른 챕터들에서도 ‘투자’의 개념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는 전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가 자연적으로 투자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문들이다. 그 예로서 제4장 ‘섬유 및 의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20장 ‘환경’, 제21장 ‘투명성’에서 일부 ‘투자’에 대한 언급 및 관련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31)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IV. 한·미 FTA 이후 투자 현황 및 분석

### 1. 한국의 대미 투자 변화

한·미 FTA 이전과 이후 전반적인 한국의 해외투자, 즉 한국인이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투자한 자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장과 더불어 수출시장의 확대 또한 이러한 해외투자 증대의 원인이 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1년 이래 해외투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농림,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3차 산업 위주로 변화하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1차 산업 참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1〉한국의 업종별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금액	5,164	3,697	4,062	5,989	6,557	11,194	20,735	23,064	19,519	24,371	26,672	23,356	16,874
농림 어업, 광업	74	219	348	343	500	1,738	2,103	3,665	5,517	7,416	7,713	7,124	3,683
제조업	3,834	1,744	2,160	3,380	3,660	5,119	7,166	6,868	4,480	7,163	8,298	7,472	6,651
서비스업 32)	1,256	1,734	1,553	2,226	2,397	4,337	11,466	12,530	9,882	9,791	10,661	8,761	6,540

주: 1) 실제투자기준 2) 2013(1~9월)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해외투자는 주로 아시아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지리적 근접성 및 시장 구조의 유사성 등 여러 원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FTA로 인하여 일종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up>33)</sup>가 발생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무역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백분율로 살펴볼 때 총투자 대비 대아시아 투자비율은 2007년 52.6%에서 2012년 43.7%로 감소한 반면 미국이 포함된 북미지역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비율은 2007년 이래 증가추세가 이어져서 2012년 북미 19.1%, 중

32) 전기, 가스 수도,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33)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효과.

남미 10.9%에 이르렀다. 총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북미 또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NAFTA 체결로 인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인센티브 증가뿐 아니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및 타결 또한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 한국의 최근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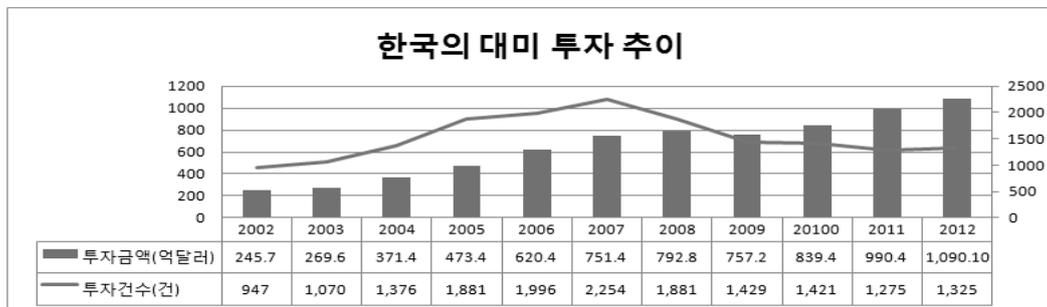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투자	22,302	23,883	20,382	24,366	26,491	28,721	16,876
아시아	11,657	11,766	6,769	10,063	11,087	12,846	7,723
중동	369	264	321	349	268	443	391
북미	3,754	5,263	6,000	4,624	7,266	5,643	2,559
중남미	1,288	2,101	1,038	2,138	2,324	3,180	1,683
유럽	4,452	3,398	5,331	6,123	3,655	3,513	2,541
아프리카	239	320	374	291	372	495	106
대양주	543	771	549	778	1,519	2,601	1,873

주: 1) 연월중 실적임, 단 계는 196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합산실적임. 2) 2000년 1월 지역분류체계 개편으로 조정된 수치임. 3) 2013년 9월30일까지 합산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구체적인 한·미 FTA의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량은 한·미 FTA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이 개시된 2005년도 이후부터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왔지만, 실제로 한국과 미국 간 FTA가 발효하게 된 2012년 이후의 변화는 투자자유화의 내용을 포함한 FTA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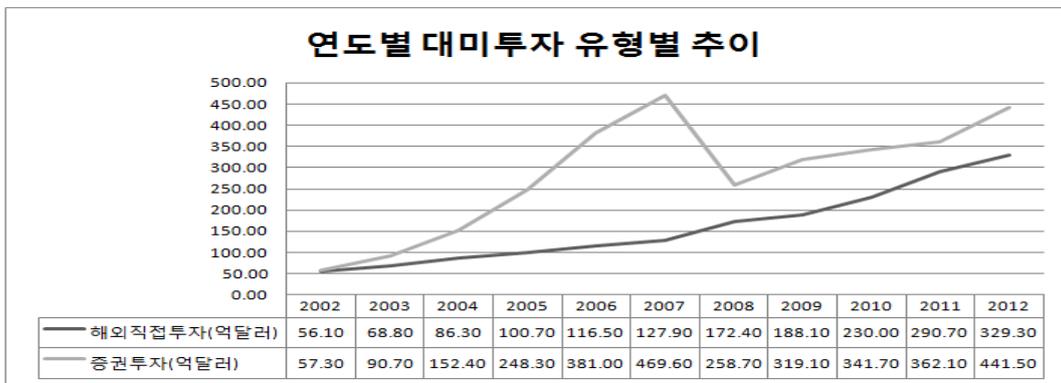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대미 투자 추이(2002-2012)



\*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대미투자(한국수출입은행)

또한 비록 투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액의 규모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한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과 더불어 현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FDI의 증가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순 자본 유입만을 의미하는 증권투자보다도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결과로서의 FDI 증가가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그림 2〉 연도별 대미투자 유형별 추이(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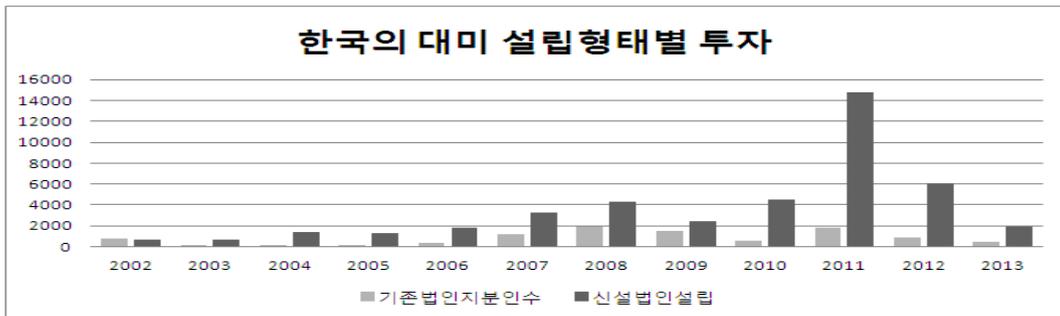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 기업들의 FDI중 현지 설립형태 또한 신설법인의 증가는 물론 기존법인지분인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발효가 임박했던 2011년도에는 신설법인설립의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뿐만 아니라 대미 목적별 투자를 살펴보면,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7년도에는 자원개발 및 현지시장진출 등 이전에는 부진했던 분야에 있어서 현지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투자 금액의 상당한 증가가 목격되었다.

34) FTA발효와 함께 미국시장 내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그림 3> 한국의 대미 설립형태별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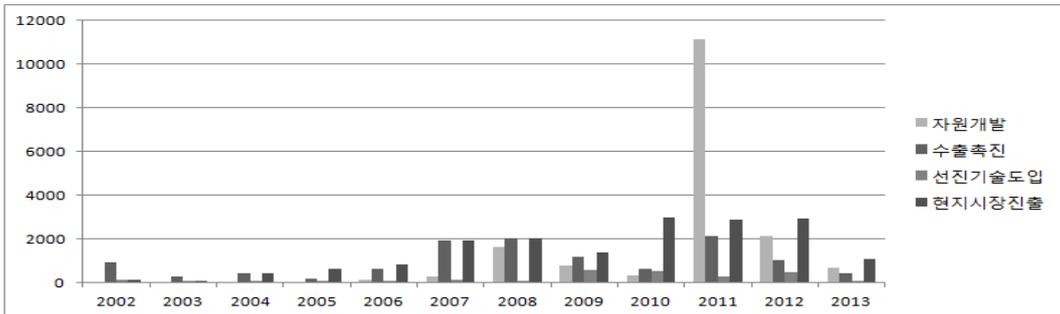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1) 2013(1~9월)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4> 한국의 대미 목적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주: 1) 2013(1~9월)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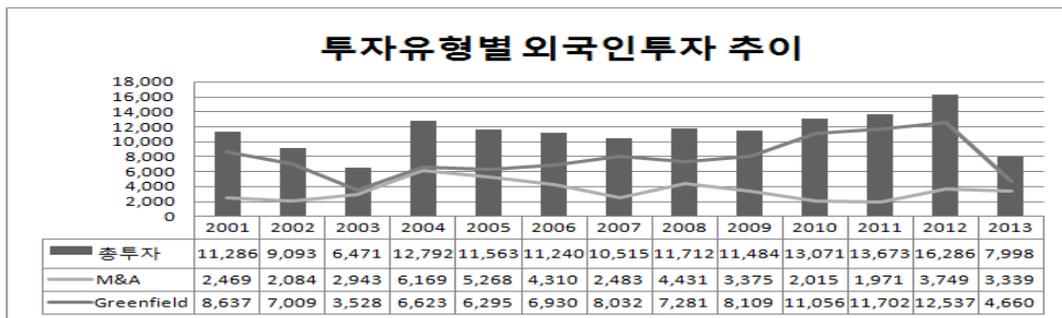
## 2. 미국의 대한 투자 변화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더욱 증가하였다.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및 체결로 인한 투자자유화 및 보호의 증대 또한 한국의 국내 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전반적인 개정뿐 아니라 FTA 당사국인 미국 기업들의 투자증대로 인하여 2011년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sup>35)</sup>의 신고금액이 100억달러 돌파하였으며 최근지식경제부는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액이 전년

35)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대비 18.9% 증가한 162.6억달러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996년 통계이후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것이다.

<그림 5> 투자 유형별 외국인투자 추이



주: 1) 신고기준 2) 2013년 (1-6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한·미 FTA발효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투자 또한 한국을 거치게 되면서 대한투자량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 상승, 한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투자(M&A)의 증가 또한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투자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M&A뿐만 아니라 그린필드형 투자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FTA가 단순히 투자자유화만이 아닌 무역자유화와 함께 수반된 결과로서 자본유입뿐 아니라 FDI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린필드형 투자의 증가는 즉, 공장과 사업장의 국내 설치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국내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국의 대한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증대하였으며 미국, 일본 및 중화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미 FTA 체결 및 발효 이후인 2011년 이후에 미국의 대한 투자뿐 아니라 미국으로 진입코자한 일본 및 중화권의 투자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6〉 최근 주요국의 대한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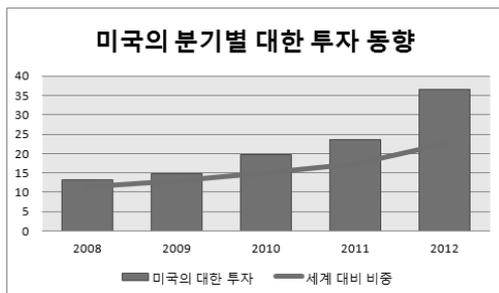
주: 1) 투자통계는 신고기준 \* 출처: 지식경제부

미국의 대한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년대비 20.1% 증가하여 세계대비 비중이 17.3%, 2012년에는 전년대비 54.9% 증가하여 세계대비 22.6%에 이르렀다.

〈그림7〉 미국의 분기별 대한 투자 동향

〈표3〉 미국의 최근 대한 투자

(단위: 억 달러, %)



연도	미국의 대한 투자	증가율	세계 대비 비중
2008	13.3	-43.0	11.3
2009	14.9	11.9	12.9
2010	19.7	32.8	15.1
2011	23.7	20.1	17.3
2012	36.7	54.9	22.6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한·미 FTA 발표 이후 최근의 투자변화를 살펴보면 '12.2-4분기 미국의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70.5% 증가한 32.5억 달러로 '01년 이래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2.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했던 미국의 대한 투자가 한·미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4〉 최근 대한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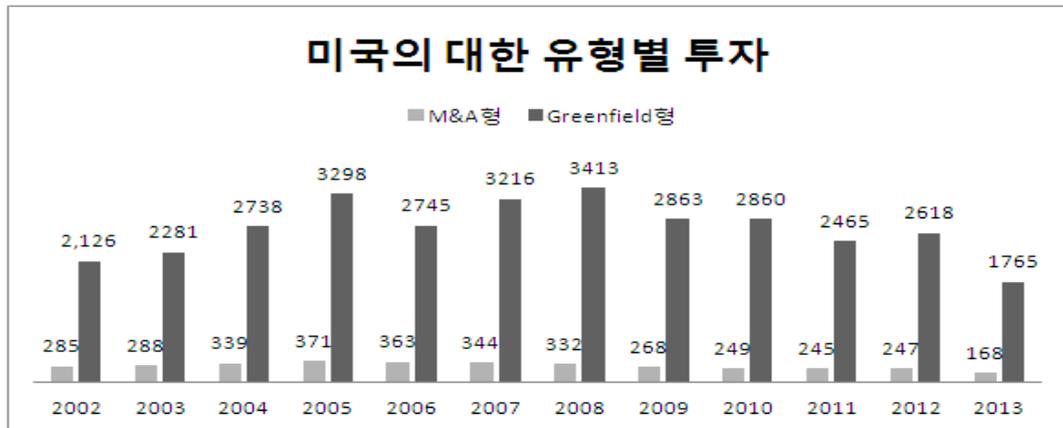
	2011		2012.1/4			2012.2~4/4			2012. 3.15~2013. 2.2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가율	건수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2,708	13,673	714	2,346	17.0	2,151	13,911	19.2	-	-
미국	305	2,375	81	427	-8.7	236	3,247	70.5	4,529	113.6

주 1) 투자 통계는 신고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대한 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M&A 투자의 꾸준한 강세는 FTA 발효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FDI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한 FDI를 보여주는 그린필드형 투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협상 개시 시점인 2005년부터 체결 후 발효된 2011년 이후 직접적인 FDI 증가가 목격된다.

〈그림8〉 미국의 대한 유형별 투자

(단위: 건수)



주: 2013(1~9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V. 요약 및 향후 투자 환경 변화전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미간 투자환경의 변화를 다자간 투자협정, 한·미 양자 간 투자협정 그리고 한·미 FTA체결이 된 이후 투자관련 규범으로 인한 투자환경변화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비록 다자간 투자협정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부진하고 한미 BIT의 무산으로 인하여 한·미간 투자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지만 한·미 FTA를 통하여 이전 BIT협상단계에서 논의되었던 대부분의 투자규범이 함께 도입되면서 투자보호는 물론 투자자유화도 함께 이루어 졌다. BIT와는 달리 FTA에서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함께 투자 관련 규범이 광범위하게 전 챕터에 걸쳐 다루어졌으며, 투자챕터 또한 이전 BIT에서 논의되었던 수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이렇듯 한·미간 투자환경은 2012년 발효한 한·미 FTA의 협상 개시를 기점으로 보다 더 상호 개방적이고 긴밀한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변화, 한국의 대미투자 및 미국의 대한투자 변화를 그간의 실적을 여러 가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FTA의 투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외국기업 250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미 FTA 타결 시 73개사(29%)가 투자확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sup>36)</sup> 한·미 FTA는 한국에게 있어 유리한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sup>\*</sup>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sup>37)</su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투자의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sup>38)</sup> 동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한·미 FTA에서의 투자챕터 체결의 성공요인은 투자자유화의 확대나 투자보호의 강화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라는 조건하에서 투자유치의 효과를 증대시킨데 있다. 둘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한·미 FTA이후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 이는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서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과 더불어 현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 기인한다. 셋째, 외국인들의 대한직접투자(IFDI)는 미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와 한국의 외투기업 친화적 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36) '07.3, Invest Korea : 기진출기업 196개사 중 45개사(23%)가 투자 확대, 미진출기업 54개중 28개사(52%)가 신규투자에 긍정적 반응

37) 미국과의 FTA가 미국 외 지역으로부터의 FDI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미국 외 지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FTA 회원국에 진입하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여 미국시장 진입 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7)에 따르면 “한·미 FTA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불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효과 230-320억불)”

라의 FTA네트워크 확산, FTA를 활용한 동북아 거점형 지식서비스분야 투자유치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의 확대가 최대 요인으로 파악된다.

향후 일본의 TPP<sup>39)</sup>가입 및 TPP협상<sup>40)</sup>타결 추진, 미국과 EU간 TTIP<sup>41)</sup>협상 개시추진 등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시장을 내수시장화하기 위해서는 FTA활용률을 제고 시키고 국내유통시스템을 정비하여 관세인하효과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후생으로 이어지는 FTA효과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관호,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김상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직접투자유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12.
- 김인숙·손희두,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김정수,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9권 1호, 2004.
- 박순찬·강문성,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04-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법무부 (정수봉),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법무부, 2008.
- 신성식, 정하은, 이상춘,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관세학회지」, 제10권 제4호, 관세학회, 2009.
- 이성봉 외,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이성봉 외,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학노, 황경선, “FTA 투자분야의 주요쟁점 및 협상 방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9.

39) Term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의 FTA로 일본이 참여하면서 미·일FTA로 거대경제권의 탄생(GDP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 세계인구 6억 6천만명이 포함)으로 인식됨.

40)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 TPP확대협상 타결

41)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2011년 이후 미국과 EU간의 협의를 통해서 2013년 2월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선진국가간의 FTA로서 DDA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중국과의 견제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

- 장승화, “한미 FTA 투자관련 협상에서 타나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 장화식, “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시민과 세계」, 참여연대, 2006.
- 진시원, “한미 FTA 투자조항과 한국 외국인투자구조의 문제점”,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3호, 21세기 정치학회, 2006.
- 채욱 외, 「한미FTA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최낙균·이홍식 외,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한국무역투자공사, 「한·미 FTA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략」, 2006.
- Dolzer, R. and Schreuer, 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2008.
- Egger, P. and Pfaffermayr, M.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2, 2004.
- Kurtz, Jurgen. "General Investment Agreement in the WTO-Lessons from Chapter 11 of NAFTA and the OEC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2002.
- OECD,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6 Edition, 2006.
- Sauvé, Pierre. "Multilateral rules on investment: is forward movement possibl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9.2, 2003.
- Tieleman, Katia, "The failure of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and the Absence of a global Public Policy Network", UN Vision Project on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2000.
- UNCTA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 the Mid-1990s (New York and Geneva: UN, 1998)
- UNCTA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 (Geneva: United Nations,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 of Investment Environment to Cope with KORUS FTA

Hyung-Doh Hur\*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Korea and U.S. dramatically changed since Korea-US FTA. The key reasons for this successful change were liberalization and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vestment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which also brought investment market expansion. As the result of trade-diversion effect, investment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enormously increased. Through a FTA with the big economy like US, Korea's FTA network has been largely expanded. Korea further needs to utilize this outcome when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in investment markets.

**Key Words** : KORUS FTA, BIT negotiations, investment chapter, investment law, investment environment

---

\* Professor, Major of International Trade, College of Management · Tourism, Dongguk University (hhd@dongguk.ac.kr)